



일하는 부모를 위한
‘6+6 부모육아휴직제’
따라잡기

‘6+6 부모육아휴직제’란?

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
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
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
 통상임금의 100%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월 상한액(단위:만원)

1월	200
2월	250
3월	300
4월	350
5월	400
6월	450





1 '6+6 부모육아휴직제'는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?

- 「고용보험법」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(단,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)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◆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

1-1 본인은 일반 근로자이고,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나요?

- 배우자는 사용할 수 없으며, 근로자인 본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예시 1 공무원 ▶ 근로자(피보험자) 순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
근로자가 본인의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공무원인 배우자의 육아휴직 이력
증빙서류 제출 → 근로자에게 '6+6 특례 육아휴직급여' 지급

예시 2 근로자(피보험자) ▶ 공무원 순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
근로자에게 일반 육아휴직급여 지급 → 이후 공무원인 배우자의 육아휴직 이력
증빙서류 제출 → 근로자에게 '6+6 특례 육아휴직급여'의 추가지급분 지급

2 '6+6 부모육아휴직제'를 적용받으려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2024년 이후에 최초로 사용해야 하나요?

- '6+6 부모육아휴직제'는 기존 '3+3 부모육아휴직제'를 확대·개편한 제도로,
 - 부모 모두 개정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다라도, 2024년 이후에 사용한 기간이 개정법 지급요건(자녀 연령이 18개월 이내)을 충족하면 해당 기간에는 적용됩니다.

예시 1 자녀가 '22.8.15. 출생한 경우

첫 번째 휴직자 '23.10.15. ~ '24.6.14.(8개월) 사용
두 번째 휴직자 '23.11.15. ~ '24.5.14.(6개월) 사용

→ '24.1.1. 기준, 자녀 연령이 개정법 지급요건에 충족되는 18개월 이내이므로
'24년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'6+6 부모육아휴직제' 적용 가능



3

자녀가 2024년 이전에 출생했어도 '6+6 부모육아휴직제'를 사용할 수 있나요?

- 2024년 이전에 출생했더라도 육아휴직 시작 시점에 자녀 연령이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3-1

자녀가 2024년 이전에 출생했고,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처음 시작한 날이 2024년 이전인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?

- 2024.1.1. 기준, 자녀 연령이 18개월 이내라면 사용할 수 있으며 2024년 이후 사용기간에 대해 '6+6 부모육아휴직제'가 적용됩니다.

예시

자녀가 '22.6.30. 출생한 경우

첫 번째 휴직자 '23.3.1. ~ '23.12.31.(10개월) 사용

두 번째 휴직자 '23.12.1. ~ '24.7.31.(8개월) 사용

→ '24.1.1. 기준, 자녀 연령이 18개월이 지났으므로

'6+6 부모육아휴직제' 적용 불가

4

'6+6 부모육아휴직제'는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쳐야 적용되나요?

- '6+6 부모육아휴직제'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기간이 반드시 겹쳐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.
- 다만, 육아휴직급여는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개월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.
- ◆ '6+6 부모육아휴직제'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로 지급

예시

자녀가 '23.12.1. 출생한 경우

첫 번째 휴직자 '24.1.15. ~ 5.14.(4개월) 사용

두 번째 휴직자 '24.3.15. ~ 8.14.(5개월) 사용

→ 부모 공통 사용기간은 4개월이므로 4개월간 적용

5

부모가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?

- 부모가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했다면,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야 적용이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.
- 따라서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게는 우선 ① 일반 육아휴직급여(월 상한액 150만원)을 지급하고, ②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때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차액분(6+6 적용급여-일반 육아휴직급여)을 지급합니다.

예시

‘6+6 부모육아휴직제’ 1개월을 적용받는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급여

- ✓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인 경우
→ 1개월분의 최대 상한액인 200만원으로 적용
- ✓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1개월분 육아휴직급여는 1,125,000원
(통상임금의 80%인 월 최대 상한액 150만원에서 사후지급금 25%를 제외한 금액)
- ★ $2,000,000 - 1,125,000 = 875,000$ 원 추가 지급

6

첫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‘6+6 부모육아휴직제’를 적용한 육아휴직급여 추가분을 지급할 때, 통상임금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요?

-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첫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할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.



참고

6+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사례



부모 중 한 명이 개정법 시행('24.1.1.) 이후 최초로 사용한 경우

→ 부모의 첫 6개월 급여에 대해 '6+6 부모육아휴직제' 적용

사례

부								1	2	3	4	5	6
모	1	2	3	4	5	6	7						

'24.1.1.

3+3 부모육아휴직제 일반육아휴직급여 6+6부모육아휴직제



부모가 개정법 시행 전에 사용했으나, 개정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기간이 있는 경우

→ 부모의 육아휴직 첫 6개월 범위 내에서 '24.1.1. 이후 사용기간에 대해 '6+6 부모육아휴직제' 적용

사례 1

부				1	2	3	4	5	6			
모	1	2	3				4	5	6			

'24.1.1.

사례 2

부			1	2	3	4	5	6			
모	1	2	3	4	5		6				

'24.1.1.

3+3 부모육아휴직제 일반육아휴직급여 6+6부모육아휴직제